일반직원교육·봉사평정내규 4-2-10

규정번호 4-2-10
제정일자 2010.1.13
최근개정 2022.4.8
개정차수 3차 개정
관리부서 총무회계팀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교법인 명지학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및 우리대학 일반직원교육·봉사실적심의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일반직원의 교육·봉사평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내규의 적용대상은 일반직원(일반직, 기술직, 별정직)으로 한다.(개정 2022.04.08.)

② 3급이상의 일반직원은 교육·봉사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평정원칙) 교육·봉사평정은 인사규정 및 위원회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한다.

제4조(평정방법) ① 교육·봉사평정은 인사평정 비율의 100%중에서 교육평정10%와 봉사평정 5%를 반영하여 평정한다.

② 교육·봉사평정 점수는 평정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별표1] 및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③ 교육·봉사평정 항목별 산출기준의 세부 사항은 일반직원교육·봉사실적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평정기간) 일반직원 인사평정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평정결과 활용) 일반직원 교육·봉사평정 결과는 각종인사 관리에 반영한다.

제7조(담당) 일반직원 교육·봉사평정은 사무처장의 책임으로 총무회계팀장이 담당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제8조(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팀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7조의 담당은 2010년 3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총무과장” 을 “총무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육·봉사평정 항목별 점수 산출 기준

구분		5급이상	6급이하	기술직	비고
교육평정(10%)	교내·외교육	필수교육(10점)	필수교육(10점) *선택교육(10점/2)	필수교육(10점)	
	*교육활동		강사활동(5점/2) 학습조직(10점/2)		
	*가점	자격증 (4점이하)	자격증 (4점이하)	자격증 (4점이하)	*5급 자격시험과 연계 (6급이하 적용)
	감점	교육행사참여도 (-2점이하)	교육행사참여도 (-2점이하)	교육행사참여도 (-2점이하)	
봉사평정(5%)		교내·외봉사 (10점/2)	교내·외봉사 (10점/2)	교내·외봉사 (10점/2)	

※ 교육평정 점수 만점은 10점 : 필수교육 항목을 기준으로 함.

※ 만점 기준 항목외 교육평정항목(*표시되어 있는 항목)은 추가 획득점수로서 만점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을 때 자기가 노력하여 평정점수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 임.

▪ 선택교육, 교육활동은 획득점수/2(환산율)를 반영하고, 가·감점은 획득점수 그대로 반영함.

※ 봉사평정 만점은 5점 임. 즉, 봉사평정점수 = 획득총점/2(환산율)